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0000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근저당권등기 설정의 경위

피고는 답변서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월 4%의 약정이자를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약정이자가 변제될 때까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〇〇. 〇. 〇. 금 6,000만원을 변제기 20〇〇. 〇. 〇. 〇.로 하고 이자는 월 2%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차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 〇〇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〇〇〇〇호로서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금 6,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해 〇. 〇.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2. 피담보채권의 소멸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참조).

그 뒤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이르러 원고는 차용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고자 현실제공 하였으나 피고는 이자를 월 4%로 주장하며 변제의 수령 을 거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 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 다(민법 제487조 참조). 이에 따라 원고는 20〇〇. 〇. 〇〇. 귀원소속 공탁함 원에게 20〇〇년 금 제〇〇〇〇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숙화 용원리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공탁서 참조).

3. 따라서 월 4%의 이자약정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의 표시

-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 157.4㎡
-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주택
 - 1층 74.82 m²
 - 2층 74.82 m²
 - 지층 97.89㎡. 끝.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 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 재 사 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실권효의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66조 제2항)
기 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해배상액의 예정은 이고, 위약금의 약정은 항 내지 제4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무불이행 사실만 증명예정배상액을 청구할의 예정액」을 부당히제적 지위, 계약의 목액에 대한 예정액의상태 등을 참작한 결에 있는 채무자에게	에 관한 손해비한 경우에는 행의 청구나 손해배상액의 손해배상액의 수 있음. 법원 과다하다 하 적과 내용, 손 해비율, 예상손하과 손해배상 여부당한 압박을	내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예정으로 추정함(민법 제398조 제1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일이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 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 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 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 계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 !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